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

발의연월일: 2020. 6. 4.

발 의 자:이종성·정운천·서정숙

김석기 • 박성중 • 전주혜

허은아 · 이 용 · 신원식

성일종 · 임이자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의 '노인학대 현황보고서'에 따르면 2019년도의 노인학대신고 접수는 총 15,482건이며, 학대 판정은 2014년 3,532건에서 2018년 5,188건으로 4년 사이 1,500건 이상 증가하였음.

학대가 재발되는 경우도 2014년 208건에서 2017년 359건, 2018년 48 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,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, 그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로 발생하였음.

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. 따라서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를 의무화하고,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(이하 "폐쇄회로 텔레비전"이라 한다)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
- 2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 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게 신고한 경우
- 3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,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 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 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

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2.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
- 3.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 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
-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 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 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·절차·요건,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3조의3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 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수급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- 2.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·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 우
- 3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안전업 무 수행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1 등의 법령에 따른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- 4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. 그 밖에 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- 2.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 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
-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·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하여야 한다.
-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제25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한다.

제36조의2 중 "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기준을 위반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관리 및 영상정보 보 관기준을 위반한 경우
- 2.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

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

- 2.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
- 2.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

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 치·관리의무를 위반한 자
- 2.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
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

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33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
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"폐쇄회로 텔레비전"이라 한다) 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 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 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.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가 수급자, 그 보호자 및 장 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

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2.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

 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
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
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
 안전하게 관리할 것
- 3.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 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
-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

<신 설>

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 관하여야 한다.
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 기준 및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·절차·요건,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3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수급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 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 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2.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

-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 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3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1 등의 법령에 따른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- 4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. 그 밖에 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청하는 경우
-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

 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

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
- 2.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저장장 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
-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·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하여야 한다.
-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・

제36조의2(시정명령) 특별자치시 제36조의2(시정명령) ------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· 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 나에 해당하는-----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 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<신 설>

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

제67조(벌칙) <신 설>

관리	의	ユ	영	상정	보의		클람	에
<u>관</u> 히	무역	0]	법이	세서	규>	정된	것	을
제외	하.	고는		「개	인정	보	보	호
법」	(제	25 <i>곱</i>	는	제	외한	·다) {	<u>)</u> <u>=</u>	적
<u>용</u> 힌	<u> 다.</u>							

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1.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관리 및 영상 정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.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 재무·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

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

제6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 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 략) <신 설>

3. ~ 5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

제69조(과태료) ① (생 략) <신 설>

치	목적	리과	다른	목	적.	으로	폐
쇄	회로	텔리	테비전	을	임	의로	조
작	하거기	나	다른	곳	을	비추	는
행 :	위를	한	자				

2.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 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 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 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

<u>(2)</u> -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- 2.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 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 당한 자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<u>③</u>·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

제6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 징수한다.

1.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
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
거나 설치·관리의무를 위반한
<u>자</u>
2.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
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
③ 제1항 및 제2항